의 안 번 호

1038

【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구나 다 다 그 사

검토보고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3. 11. 12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1. 15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11. 29.(금)

### 2. 제정이유

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(현행 6개→ 4개)을 반영하고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을 증원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"570명"에서 "572명", 집행기관의 정원 "554 명"을 "556명"으로 각각 2명 증원(안 제2조)

나.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(안 제3조, 별표 1)

コ	분	당 초			변	경
		일반직	기능직・고용직	별정직・정무직	일반직	별정직・정무직
刊	율	82% 이상	17% 이내	1% 이내	99% 이상	1% 이내

다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안 제3조, 별표 2)

2. 기능직공무원 : 삭제

라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별표 3)

1) 일반직 : 508명 → 570명(증62명)

2) 별정직 : 2명 → 1명(△ 1명)

3) 기능직 : 59명 → 0명(△59명)

※ 기존 기능직 59명 일반직 전환

# 4. 관련법령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(특례규정 제정안) 및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

### 5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O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(현행 6개→4개)을 반영 하고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
- O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,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비율)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를 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

#### 나. 주요 개정 내용은

- O 기능직 공무원(59명)을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과
- O 6급이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
- O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